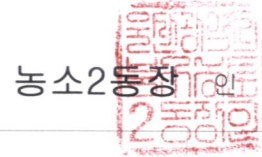


공고 제 49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09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진	김 *현 1995-11-14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(매곡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6-09